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원·교습소 등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실시〉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64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	9
참고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오경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책무 부여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u>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 흉포화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2010. 4. 15.)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추

가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¹⁾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죄(불법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²⁾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교습소 등에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행해질 수 있는 불법촬영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³⁾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학원·교습소 등의 청소년이용 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면서도 “정기 점검”의 주기, 방법 등을 명확

3) 「학원의 설립·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

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정기 점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따라서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실효성 있게 담보되기 위해서는 정기 점검의 주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학원, 교습소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완·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4)는 「학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 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⁵⁾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교습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점검 등의 사항을 해당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불법촬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⁶⁾이 될 것으로 예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2020. 9. 7. 보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과 교습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⁷⁾의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차. (생략)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 러. (생략)

학원과 교습소에 설치된 화장실은 점검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⁸⁾는 조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민간시설 내 설치한 화장실을 “민간화장실”로 정의하면서, 민간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을 방지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에 대한 정기 점검 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의가 없다는 입장임.

8)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이외 전국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123개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에 있음.

9)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관련 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개정안의 내용 중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에서 카메라 외 초소형 기기의 탐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 학원 및 교습소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7호, 2024. 7.23.)¹⁰⁾이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¹¹⁾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93

10) 참고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1)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606호, 2021. 3. 8.

참고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